

의안번호	제 8 호
의결연월일	2018. 9. 6.

- 예산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-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. 8. 29. 예산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2018. 8. 29.
- 다. 상 정 일 자 : 2018. 9. 6.

제243회 예산군의회(정례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## 2. 제안설명 요지 [총무과장 : 김 승 영]

### 가. 제안이유

- 재난·재해 시 긴급구호로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인도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예산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육성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(안 제3조)
  -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에 관한 사업
  -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
  -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사업
  -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등

-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시설 사용(안 제5조)
  - 봉사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음.
- 적십자 활동을 통해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 [전문위원 : 안 명 애]

- 이 조례안은 재난·재해시 긴급구호 활동과 사회봉사, 지역사회 공익활동 사업 등 다양한 적십자 수행사업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과 공유재산 및 시설사용 등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,
- 검토한 결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,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,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근거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.

### 4. 질의·답변요지

- 없 음

### 5. 토 론 요 지

- 없 음

## 6. 심 사 결 과

○ 원안가결

## 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## 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